

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
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허창원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9년 6월 7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및 도 소재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공구매를 할 경우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-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수립,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
(안 제4조~6조)
-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(안 제7조)
-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생산·유통 판로지원
(안 제11조~14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조례 제정을 통해 충청북도 및 도 소재 공공기관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공구매를 할 경우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제2조 (정의)에서 "사회적경제기업"이란 사회적기업, 사회적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으로 명시하였음.
 -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의 구매촉진시책의 수립·시행사항과 구매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였음.
 - 제7조에서는 도 내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위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규정과
 - 제12조에서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·학 협력 및 기술지도 사업을 개발,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음.
- 사회적경제기업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충청북도가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·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

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 앞으로 이러한 사회적
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구매뿐만 아니라 종합적 육성 등도
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붙 임: 충청북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.
끝.